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확대 등》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04호)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28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한준호의원(제2208404호)·허종식의원(제2208828호)

대표발의	1
1. 제안경위	1
가. 한준호의원안	1
나. 허종식의원안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가. 한준호의원안	1
나. 허종식의원안	3
3. 검토의견	4
가. 수도권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확대 (한준호·허종식의원안 제3조제1항 등)	4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 삭제(한준호의원안 제29조제3항 신설 등)	17

I. 한준호의원(제2208404호)·허종식의원(제2208828호)

대표발의

1. 제안경위

가. 한준호의원안

가. 발 의 자 : 한준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2. 25.

다. 회 부 일 : 2025. 2. 26.

나. 허종식의원안

가. 발 의 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3. 12.

다. 회 부 일 : 2025. 3.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준호의원안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100만제곱미터(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미만의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권한위임은 수임기관의 유사권한과 책임 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에만 위임하여 수도권에 대하여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0만제곱미터(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미만의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시·도지사의 권한임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과 관계없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권한과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4

조제1항·제4항, 제5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29조제3항 삭제 등).

나. 허종식의원안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비수도권 100만제곱미터 미만 및 수도권 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달리 정한 것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라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3. 검토의견

가. 수도권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확대(한준호·허종식의원안 제3조제1항 등)

현행	한준호의원안	허종식의원안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u>개발제한구역</u> 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 ----- ----- ----- ----- ----- ----- ----- ----- ----- 다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시사”라 한다)가 그 해제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시사”라 한다)는-----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 -----.
<단서 신설>		

현행	한준호의원안	허종식의원안
<신설>	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100만 제곱미터 이상
<신설>		2. 시·도지사: 100만 제곱미터 미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 ----- ----- ----- ----- ----- ----- ----- ----- ----- ----- ----- ----- ----- ----- ----- <u>시·도지사</u> -----	

[illegible]

[illegible]

현행	한준호의원안	허종식의원안
1. ~ 3. (생략) ⑤ ~ ⑦ (생략)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략)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난의 발생 등 대통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1. ----- ----- ----- ----- ----- -----.	

현행	한준호의원안	허종식의원안
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u>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u> 2. (생략) ④·⑤ (생략)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u>국토교통부장관</u>이 결정한다. ② <u>국토교통부장관</u>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u>중앙행정기관의 장</u>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	----- ----- ----- -----제3조제1항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는----- ----- ----- ----- ----- ----- -----.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제3조제1항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가----- -----. ② <u>국토교통부장관</u> 또는 <u>시·도지사</u>는----- ----- -----<u>중앙행정기관의 장</u>(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	

현행	한준호의원안	허종식의원안
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 해당한다)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illegible]

현행	한준호의원안	허종식의원안
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 ----- -----, ----- ----- ----- -----.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¹⁾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절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垵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여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²⁾ 등에 위임³⁾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⁴⁾에서는 ④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거나 ⑤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경우 100만제곱미터(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미만의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음.

한준호의원안 및 허중식의원안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④ ~ ⑩ (생략)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23.2.10.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이양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대통령령 개정(2023.6.13 개정, 2023.7.1 시행)을 통하여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수도권의 경우 30만제곱미터의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중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관련】

과제명	주요 내용	부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현행) ①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②권역별 해제가능총량 내에서 해제 가능 → (개선) 비수도권 지자체의 ①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②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해제총량에서 제외	국토 교통부

※자료: 국무조정실

【 개발제한구역 권한의 위임 조문관련 시행령 개정 연혁 】

해제권한 위임 범위	개정조문	시행일
100만제곱미터 미만 (수도권은 30만 제곱미터 이하)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7.1
30만제곱미터 이하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3.29
소규모 단절 토지와 경계선의 관통 대비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소규모 단절 토지 및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4.3.11

이에 따라 한준호의원안 및 허종식의의원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도권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면적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시행령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면적기준을 설정하여 지역별로 위임 권한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면

적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해소 및 지방분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한준호의원안 및 허종식의원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에 100만제곱미터까지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위임한 것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서, 수도권은 급격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가 비수도권에 비해 높고, 도시지역의 녹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비수도권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현 기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 삭제(한준호의원안 제29조제3항 신설 등)

[illegible]

현행	한준호의원안
1. ~ 3. (생략) ⑤ ~ ⑦ (생략)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생략) ③ <u>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u> ④ · ⑤ (생략)	<u>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제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u> -----.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4조제4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입안권자⁵⁾는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 중 훼손지의 복구계획 등 관리방안을

5)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포함)하여야 하며, 훼손지의 범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⁷⁾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제29조제1항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바다·하천·도랑·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거나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 ③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 ④ ~ ⑩ (생략)

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¹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¹¹⁾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 권한이 위임되면 수임자 명의로 책임으로 권한이 행사되며, 그 법적 효과도 수임자에게 귀속됨을 감안할 때,

한준호의원안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경우 권한과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임.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⑧ (생략)

⑨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해제하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한준호의원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절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간 이권 조정,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고, 권한이 위임된 면적 범위 내에서 연접한 지역의 순차적인 해제를 통한 이른바 ‘쪼개기 개발’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과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1